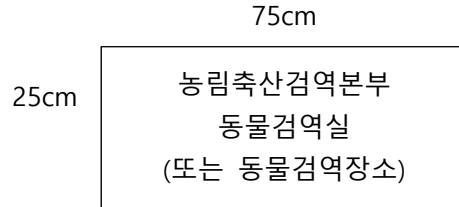


[별표 25]

**특급탁송물품 등 현장검사를 위한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**  
**(제13조제3항 관련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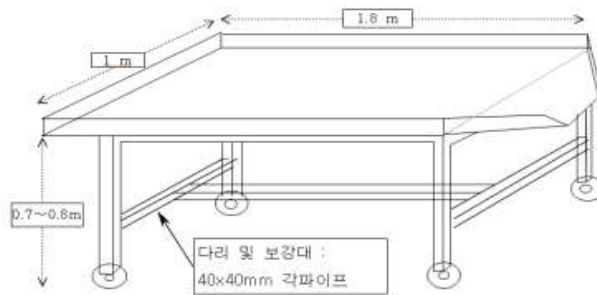
[시설기준]

1. 특급탁송물품 지정장치장 및 특급탁송물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(또는 시설) 및 그 밖의 지정검역물 반입 보세구역 시설은 원활한 검역을 위하여 다음 시설 또는 요건을 충족한 검역실을 갖추어야 한다.
  - 가. 특급탁송물품 지정장치장 및 특급탁송물품 운송업자가 운영 하는 보세창고(또는 시설)
    - 1) 면적 6m<sup>2</sup> 이상의 검역실(동일한 장소에 2개 이상의 특급탁송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검역실 설치 가능)을 설치해야 한다.
      - \* 인천 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경우 다수의 특급탁송업체가 공동 검역실을 설치하여 검역을 받을 수 있다.
    - 2) 검사대
    - 3) 조명시설
    - 4) 확대경
    - 5) 저울
    - 6) "동물검역실"이 표시된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- 나. 그 밖의 지정검역물 반입 보세구역 시설
    - 1) 면적 6m<sup>2</sup> 이상의 검역실을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냉장·냉동창고 또는 그 밖에 검역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동물검역 전용구역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.
    - 2) "동물검역실(또는 동물검역장소)"이 표시된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  - 3) 반려동물 반입 창고는 소독약, 분무기, 동물탈출방지 펜스, 그물 등 방역 및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.
  - 다. 지정표지판 규격



- 흰색바탕에 검정 글씨
- 재질: 스테인레스, 금속, 폼엑스, 철재 또는 아크릴재 등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

라. 검사대 규격



- 크기 : 가로 1.8m x 세로 1m x 높이 0.7~0.8m
- 재질 : 스테인레스 강철
- 이동이 가능하도록 다리에 바퀴 부착
- 검역장소의 특성에 따라 크기의 조정이 가능하며, 검역대상품목의 종류 등에 따라 테이블형 등으로 변형 가능하여야 함

[관리기준]

1. 검역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 하여야 한다.
2. 검역물은 검역장소에 반입된 후 검역이 끝날 때까지 파손·오염 및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.
3. 검역장소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그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.
4. 불합격품은 폐기 전까지 전용구역에서 이동시켜서는 안 되며, 불합격품이 30일 이상 장기 보관되는 경우 특급탁송업체 및 보세창고 운영자는 그 목록을 관할 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